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남해석 의원)

의안 번호	23-185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.

발의자 : 남해석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
오옥자, 장정희, 차해영, 한선미,
홍지광

1. 제정이유

마포구의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(안 제3조)
- 다.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(안 제4조)
- 라.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(안 제5조)
- 마. 보조금 관리(안 제6조)
- 바. 시행규칙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11. 17. ~ 11. 22.

나. 의견제출: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공공심야 어린이병원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 약국으로

지정할 수 있다.

제5조(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)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
2.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「의료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
3.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·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

제6조(보조금 관리)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보건의료기본법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66호, 2021. 3. 23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③ 생략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4조제1항

제4조(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에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의약과 김하영
연 락 처	02-3153-9125